

# 2021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 I. 추경예산개요

### 1. 세 입

- 스마트도시정책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기정 예산 109억원과 같음.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총 계	10,901	10,901	0	0.0%	
세외 수입	경상적	8,965	8,965	0	0.0%
	임시적	893	893	0	0.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96	96	0	0.0%
보조금	940	940	0	0.0%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6	6	0	0.0%	

### 2. 일반회계 세출

- 스마트도시정책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은  
1,007억 6천 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981억 8천 7백만원 대비  
2.6%(25억8천2백만원) 증액 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행정 관리	합계(일반회계)	97,625	98,187	100,769	3,145	2,582	3.2%	2.6%
	행정운영경비	727	727	727	0	0	0.0%	0.0%
	재무활동	3	3	94	91	91	3033.3%	3033.3%
	사 업 비	96,894	97,457	99,948	3,054	2,491	3.2%	2.6%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1 예산		2021 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계(일반회계)	4,714	5,277	7,858	3,145	2,583	66.7%	48.9%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0	563	1,500	1,500	938	순증	166.6%
디지털배움터 운영	0	0	391	391	391	순증	순증
국고보조금 반환	0	0	91	91	91	순증	순증
지능형 CCTV 고도화	4,714	4,714	5,876	1,163	1,163	24.7%	24.7%

3. 특별회계 세출

○ 스마트도시정책 2021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은 49억 6천 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29억 6천 4백만원 대비 67.5% 증액 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행정 관리	합계(도시개발특별회계)	2,964	2,964	4,964	2,000	2,000	67.5%	67.5%
	재무활동	0	0	2,000	2,000	2,000	순증	순증
	사업비	2,964	2,964	2,964	0	0	0.0%	0.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1 예산		2021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계(도시개발특별회계)	0	0	2,000	2,000	2,000	순증	순증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0	0	2,000	2,000	2,000	순증	순증

## II. 검토의견

### 1.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2021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자치단체자본보조)” 9억 3천 8백만원, “지능형 CCTV 고도화(자치단체자본보조)” 11억 6천 3백만원,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국고보조금 반환)” 9천 1백만원 등 총 4건에 25억 8천 3백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긴급한 수요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의 편성이 타당하고 적합한 것인지와 개별 대상 사업의 증액 규모가 적정 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기정예산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증액 내용 및 사유
합 계	5,277	7,858	2,581 (48.9%)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563	1,500	938 (16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선정(구로구)에 따른 증액 (국비 375백만원, 시비 563백만원)</li> <li>◦ 자치단체자본보조(563백만원→1,500백만원)</li> </ul>
디지털 배움터 운영	0	391	391 (순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기정통부 주관 디지털배움터 운영 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li> <li>◦ 사무관리비(0→391백만원)</li> </ul>
지능형 CCTV 고도화	4,714	5,876	1,163 (2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가 주변 원룸촌 일대(93개소) CCTV 확대 구축을 통한 안심귀갓길 조성</li> <li>◦ 자치단체자본보조(4,714백만원→5,876백만원)</li> </ul>
국고보조금 반환	0	91	91 (순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li> <li>◦ 국고보조금반환금(0→91백만원)</li> </ul>

## 가.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는 2021년 3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챌린지 솔루션 확산” 공모 사업에 동작구, 중구에 이어 구로구도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 매칭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 9억 3천 7백만원(1차 국비 3억7천5백만원, 시비 5억6천2백만원)으로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는 구로구의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의 국고보조금 3억7천5백만원 교부결정 통지를 2021년 3월 29일에 하였음.

###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500,000	562,500	937,500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00	562,500	937,500

※ 기정예산은 동작구(국비 375백만원), 중구(국비 187백만원) 간주처리 예산임.

### 〈 세부산출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 치 단 체 자 본 보 조	○ 구로구 스마트 공공 CCTV시스템(스마트폴 80개소) 구축 = 937,500천원
	- 1차 국비 보조금 교부(10%) 총사업비 3,750,000,000원*국비10%교부 = 375,000천원
	- 시비 보조금 편성(15%) 총사업비 3,750,000,000원*시비15%지원 = 562,500천원
	증감사유
	- 구로구 스마트시 솔루션 확산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교부에 의한 시비(15%) 편성

※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기업과 시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교통·안전·환경·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해결해 나가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하여 28개 도시에서 125개 솔루션을 실증하였음.

### [스마트챌린지 사업]

-(스마트챌린지) 지자체·시민·민간기업 등이 참여하여 도시문제에 적합한 스마트서비스의 발굴·실증 및 확산을 통한 기존도시 스마트화를 위해, 사업규모·기간 등에 따라 4개 세부사업 운영중

구분	시티	타운	캠퍼스(신규)	솔루션 확산(신규)
사업내용	도시전역문제해결	중소도시 특화	대학연구성과연계	우수서비스 보급
사업대상	모든 시·군	50만 이하 시·군·구	대학	모든 시·군·구
지원기간	3년(예비1y, 본2y)	1년	1년	1년
사업 규모	각 215억원	각 40억원	각 11억원	각 40억/20억원

#### 참고1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선정결과

사업 구분	주요 내용										
③ 솔루션 확산사업 (3.4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정) 응모한 90개 중, 23개 지자체 선정</li> <li>* 효과가 검증된 우수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 확산·보급 (각 19~38억원 지원, 지방비 50% 매칭)</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지자체</th> <th>솔루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서울 (3)</td> <td>구로구</td> <td>스마트 폴, 횡단보도</td> </tr> <tr> <td>동작구</td> <td>스마트 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td> </tr> <tr> <td>중구</td> <td>공유주차, 수요응답교통</td> </tr> </tbody> </table>	지자체		솔루션	서울 (3)	구로구	스마트 폴, 횡단보도	동작구	스마트 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중구	공유주차, 수요응답교통
지자체		솔루션									
서울 (3)	구로구	스마트 폴, 횡단보도									
	동작구	스마트 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중구	공유주차, 수요응답교통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1년 4월 27일자 참조.

#### ○ 사업내용

##### - 구로구 : 스마트 공공 CCTV시스템 구축

- 사업규모 : 스마트폴(3종) 80개소
- 사업내용 : 관내 주요도로 및 교차로,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스마트폴을 설치하여 사람중심, 더 행복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로 실현
- 사업비 : 3,750백만원(국비 1,875백만원(50%), 시비 562,500천원(15%), 구비 1,312,500천원(35%))
- 1차 국비 375백만원 교부 완료, 연내 2차 국비 1,500백만원 추가 교부 예정

##### - 동작구 : 스마트폴,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

- 사업위치 : 동작구 사당로
- 사업목적 :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한 교통약자의 교통안전문제 해결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스마트폴(40개), 스마트횡단보도(20개소), 스마트 버스정류장(5개소) 구축
- 사업비 : 3,750백만원(국비 1,875백만원, 시비 562,500천원 (스마트도시담당관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 200백만원, 교통운영과 362,500천원 별도 편성), 구비 1,312,500천원)
- 1차 국비 375백만원 교부 완료, 연내 2차 국비 1,500백만원 추가 교부 예정

- **중구 : 스마트 공유주차 및 수요응답 대중교통 솔루션 개발**

- 사업목적 : 다산동 성곽 주변지역 불법주정차 및 주민 보행불편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가 검증된 우수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도입
- 스마트공유주차 : 주차시설 공유를 통한 이용 효율성 증대
- 수요응답 대중교통 : 주민의 수요에 따라 배차 및 노선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최적의 합승경로로 목적지까지 이동
- 사업비 : 1,875백만원(국비 937,500천원, 시비 없음, 구비 937,500천원)
- 1차 국비 187,500천원 교부 완료, 연내 2차 국비 750백만원 추가 교부 예정

○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는 국가 공모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시비반영 사업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국고보조금 조기 확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시비 매칭 비율의 적정성 검토, 예산의 적기편성 및 집행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자치구의 국가 공모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매칭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정해진 후 시비 부담분을 무분별하게 예산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공모 사업의 적정성 및 사전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나. 디지털 배움터 운영

○ 동 사업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5조 및 제5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추진지침”에 따라 시민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시대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일환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라 함)에서 지방비 매칭방안 통보(‘21.2.9.)에 따라, 국·시비(78:22) 매칭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3억 9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코로나19로 일상이 디지털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격차가 사회·경제적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디지털배움터 1,000개소를 운영하고,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주민센터, 도서관, 경로당 등 집 근처 생활공간에서 모바일·실생활 중심의 실습형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을 수 있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디지털 포용 사회를 열어가는 지역 거점, “디지털배움터” 사업 본격 추진”, 2021년 3월 8일자 참조).

**< 디지털 역량 교육과정 개요 >**

과정명	교육목적	교육내용
디지털 기초	디지털을 알고, 친숙해지기	스마트 기기, 화상회의 솔루션, SNS 등 기초적인 디지털 사용법 교육
디지털 생활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각종 경제·사회 활동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익히기	모바일 교통, 금융, 쇼핑, 전자정부, 공공 서비스(예: 지원금 신청, 정부24) 등
디지털 심화	스스로 가치창출이 가능하고 경제·사회 활동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활용법 익히기	스마트 오피스(예: 한글, 엑셀, 포토샵), 각종 자격증, 기초 코딩 등



###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391,000	0	391,000
사무관리비	391,000	0	391,000

### 〈 세부산출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 무 관 리 비	○ 디지털배움터 운영 391,000,000원 = 391,000천원		
	증감사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추진방안에 의거 지방비 매칭을 요구		

○ 동 사업의 총 사업비는 117억 1천 5백만원으로 국·지방비(78:22) 매칭으로, 당초 과기부에서 지방비 26억 3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이 중 22억 1천 2백만원(85%)은 현물(교육장소 임대료 등)로 하고, 나머지 3억 9천 1백만원(15%)에 대해서는 현금 매칭을 의무로 요구하였음.

- 다만, 서울시 현물매칭 금액이 32억 3천 5백만원(디지털배움터 140개 현물 단가 산정 자료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현물매칭 인정 금액을 22억 1천 2백만원(85%)만 인정하고 있는바, 현물매칭 인정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서울시 디지털배움터 매칭규모 및 예산 배정(안) 〉

구분	'20년 배움터 수	합계(A+B)	조달발주 금액 (A+C) (최소기준)	국비(78%) (A)	지방비(22%)		
					소계(B)	현금(15%)(C) (최소기준)	현물(85%)
서울	140	11,715	9,503	9,112	2,603	391	2,213

※ 과기부의 비 R&D사업은 「정보통신방송사업관리규정」을 따르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업의 기획 및 선정시 R&D 사업의 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을 준용한다고 하였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별표 1]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최대인 15%를 적용하여 현물매칭을 인정하였다고 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u>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u>

※ 다만, 서울시는 모든 교육이 집합교육으로 매월 140시간씩 진행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최대 현물 금액이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교육장 임대료는 과기부 현물매칭 인정 금액(22억1천2백만원)에 못 미칠 것이라고 함.

○ **총괄거점센터 1곳(북서권 거점센터) + 권역센터 3곳 + 25개 거점센터로 운영**

**북서권 디지털총괄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로 24  
SK남산그린빌딩  
운영상태 : 운영중  
교육과정 수 : 0개 과정

**북동권 디지털총괄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3길 84  
운영상태 : 운영중  
교육과정 수 : 0개 과정

**남서권 디지털총괄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해방산로 37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1001호  
운영상태 : 운영중  
교육과정 수 : 0개 과정

**남동권 디지털총괄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길 18  
STA교육센터 2층  
운영상태 : 운영중  
교육과정 수 : 0개 과정

〈 2020년 디지털배움터 자치구별 운영현황 〉

자치구	합계	배움터		자치구	합계	배움터	
		고정형*	이동형**			고정형	이동형
종로구	5	5	0	마포구	5	3	2
중구	5	2	3	양천구	6	1	5
용산구	6	3	3	강서구	6	3	3
성동구	7	2	5	구로구	4	3	1
광진구	7	2	5	금천구	6	1	5
동대문구	6	2	4	영등포구	6	2	4
중랑구	6	4	2	동작구	5	5	0
성북구	7	2	5	관악구	6	6	0
강북구	8	4	4	서초구	7	2	5
도봉구	2	1	1	강남구	7	2	5
노원구	4	3	1	송파구	1	1	0
은평구	6	3	3	강동구	5	1	4
서대문구	7	2	5	총계 : 140개	65	75	

\* 고정형: 생활편의시설(SOC) 기반으로 10명 내외 규모의 교육장으로, 상시 교육 인프라(PC, 인터넷 등)를 구비한 교육장

\*\* 이동형: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교육받기 어려운 구민(3명 내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형 교육을 시행, 와이파이에그(무선통신 중계기기)·스마트기기 등을 준비하여 이동형 교육장 방문

○ 또한, 당초 지방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지방재정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등) 서울시와 자치구가 5:5로 부담해야 하나,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구비 확보가 어려워 올해는 전액 시비(3억9천1백만원)로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모든 자치구가 재정 부담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 25개 자치구로부터 균등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적정 한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방재정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률(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 부담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 부담률”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 자주도등을 감안하여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 다만, 서울시는 단 하나의 자치구라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와 자치구를 합한 전체 확보 금액이 과기부 현금 요구액에 미치지 못하여 국비 지원 중단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음.

○ 셋째, 동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라고 함) - 서울시 - 사업자’ 간 3자 계약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약금액의 80%는 국비를 활용하여 NIA가 집행하고, 서울시는 부담금 3억 9천 1백만원(4%)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여 용역비 성격의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음.

207 연구개발비	1.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시설비(401-01)에 계상	
	01. 연구용역비 1. 지방자치단체사업의 지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또한, 과기부의 2021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추진방안으로 보면, 현금은 지방의 경우 일반용역비 명목으로 직접 집행(지자체 → 사업자)할 수 있는 비목(연구용역비(2017-01) 등)으로 확보를 요청하였음.

○ (예산비목) 현금 지방비의 경우 일반용역비 명목으로 직접 집행 (지자체→사업자)할 수 있는 비목(연구용역비(207-01) 등)으로 확보 요청

※ 사업 성격, 예산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일반 용역비를 집행할 수 있는 비목이라면 집행 가능(21.1월, 행안부 회계제도과 구두 협의 결과) → 상세 비목은 지자체별 예산팀에 최종 확인하여 결정 필요

-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집행 가능한 용역비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되어 있음에도 ‘사무관리비’로 용역비를 과도하게 편성하고 있음.

201 일반운영비	<p><b>01. 사무관리비</b></p> <p>1. 일반수용비</p> <p>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li> <li>2) 기본사무용품비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li> <li>3) 기타수용비 : 범용 S/W 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일반수수료, 관보구독료 등</li> </ol> <p>나.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p> <p>다.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p> <p>라.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p> <p>마.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p> <p>바. 신문, 잡지, 관보, 팸플릿,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p> <p>사.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해당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li> <li>2)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li> </ol> <p>아.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li> </ul> <p>자. 기 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물품위탁취급수수료(자산취득시는 자산취득비에 포함) 및 업무대행수수료</li> <li>2) 등기 및 소송료</li> <li>3)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li> <li>4) 하역료·승선료·관세 등의 외자조작비</li> <li>5)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li> <li>6) 물품의 운송대</li> <li>7)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li> <li>8)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와 공모지방채발행제경비</li> <li>9) 국선변호사 및 수입·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외국어통역비</li> </ol>	
-----------	---	--

		<p>10)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등 각종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현상모집의 경우등 현상금이 수수료적일 때에는 포함)</p> <p><b>11)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b></p> <p>12)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시 지방세입금 수납대행 계약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수수료</p> <p>※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계획(지방세정책과-1641, 09.7.12) 참고</p>
--	--	---

- 또한, 다른 실국에서도 과도한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 및 집행하는 문제점과 시정권고가 2018회계연도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에서도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는바,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 체계에 맞는 적정 예산과목 편성을 위한 스마트도시정책관의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마지막으로, “디지털배움터”는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역량부터 취업연계 교육까지 집 근처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고령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디지털역량이 낮아 일반 시민들과 함께 같은 교육을 받는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필요로 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 또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별 다른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 지능형 CCTV 고도화

○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당초 ‘방법용 지능형 CCTV 확대설치와 저화질 CCTV 카메라 교체사업(시비:구비 5:5 매칭사업)’과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CCTV 관제인력 부족과 관제 효율성을 개선하는 ‘안전환경 개선사업(시비:구비 5:5 매칭사업)’을 위해 총 47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인 가구 등 주거취약 계층이 밀집한 대학가 주변 원룸촌 등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안전사각지역 해소 및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11억 6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방법용 지능형 CCTV 확대설치 및 저화질 CCTV 카메라 교체 사업으로 시민안전을 강화하고,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전환경 개선사업으로 관제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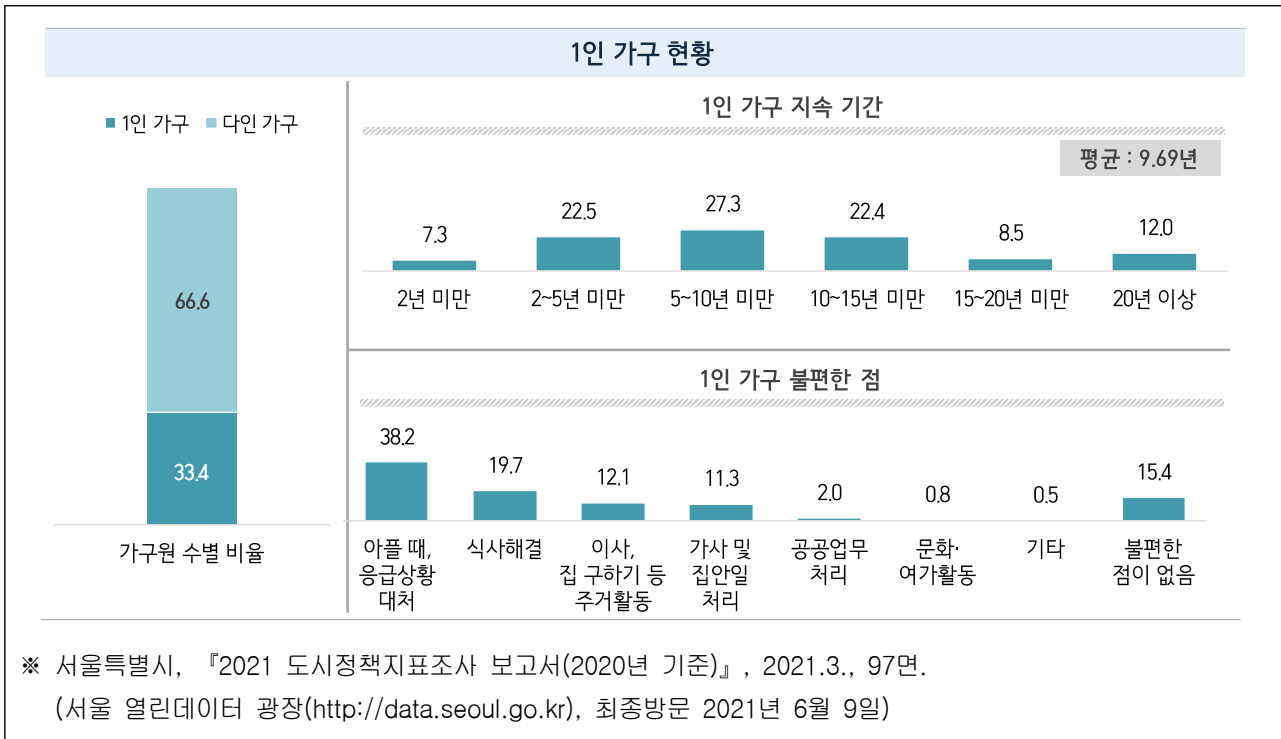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5,876,300	4,713,800	1,162,500
사무관리비	10,800	10,800	0
자치단체자본보조	5,865,500	4,703,000	1,162,500

**〈 세부산출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 치 단 체 자 본 보 조	○ 대학가 주변 원룸촌일대 CCTV 확대 93개소*25,000,000원*50% = 1,162,500천원
	증감사유
	○ 대학교 주변 원룸촌 등 안전사각지역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확대 구축하여 안심귀갓길 조성

- ‘대학가 주변 원룸촌 CCTV 확대’는 서울시 1인가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29.5%(’15년) ⇒ 33.4%(’21년) ⇒ 37.2%(’47년)), 시장 공약 사업인 “1인가구 지원” 사업 중의 하나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1인가구 밀집 지역 중심인 대학가 주변 원룸촌의 CCTV 확대로 여성 안심 귀갓길 마련 및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것으로, 2019년 ‘○○동 강간미수 CCTV

사건<sup>1)</sup>에서 보듯이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대학가 주변 원룸촌 CCTV 확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대학교 원룸촌 주변 CCTV 확대’ 사업은 범죄 예방용 고화질 CCTV를 설치하는 만큼, 과거 범죄발생 빅데이터 분석 등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장래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장소를 선정하는 등 CCTV 설치 장소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선정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1차 수요조사 후 실시 예정인 빅데이터 분석(적합성 검증) 활용데이터 적용(통계청, 경찰청 등)과 현장검증으로 최종 수량과 설치장소가 결정된

1) ○○구 ○○동에서 한 남성이 원룸으로 들어가려는 여성의 뒤를 쫓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실패한 남자는 10여 분 동안 문고리를 돌리거나 라이터를 켜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이상행동을 했음(KBS NEWS, 2019년 9월 17일자 참조, 최종방문 2021년 6월 9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84468&ref=A>).



이후에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수요조사 결과(1차)**

- 조사대상 : 63개 대학교 원룸촌 주변 CCTV 설치현황 대비 필요수량
- 조사기준 : 전교생 2,000명 이상, 대학가 주변 500M 이내
- 결 과 : 226개소 841대 CCTV 필요 **※ 빅데이터 분석, 현장검증 후 최종 수량 결정**

대학가 주변 CCTV 수요			계		CCTV 설치수량		CCTV 필요수량	
계	필요	불필요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63	40	23	2,120	6,067	1,894	5,226	226	841

※ 불필요 사유(23) : 재학생 소규모(2,000명 이하)이며 주변 CCTV로 충분(9), 학교 주변 아파트 단지 및 재개발(6), 기타('21년 자체구축, 100%기숙사 등)(8)

- 검증추진 : 빅데이터 분석(2차) 및 현장검증(3차) 실시 예정

**'21년도 추진계획**

- 규 모 : 93개소 372대(CCTV)
- 소요예산(추경) : 1,163백만원(시·구 5:5 매칭, 총사업비 2,326백만원)
- 추진내용
  - 수요조사, 빅데이터 분석 및 현장검증을 통한 CCTV 설치 위치 최종 선정
  - 범죄 예방용 고화질 CCTV 설치(비상벨, 안내판 포함)
- 市 보조금 배분조건 : 시·구 매칭(5:5)사업비 확보시 지원
  - '21.10월까지 추경 확보 예정 자치구는 지원예정(확약서 제출)
- 보조금 배정(예정) : 최종 수량 확정 및 자치구 사업비 확보여부 조사 후 결정

※ 대학가 주변 원룸촌(1인 가구) 주변 방법용 「지능형 CCTV 확충」 추진 계획(2021. 5. 26.) 참조.

- 둘째, 동 사업은 시·구 매칭(5:5) 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은 편성시부터 자치구의 사업비 확보여부 조사 후 결정되어야 하나 아직 까지 확정된 상태가 아님에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1억 6천 3백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있는바,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집행가능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25개 자치구의 대학가 주변 CCTV 설치 예산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본예산으로 사업 가능한 자치구 1개, 2021년 추경예정 자치구는 5개구로 자치구 예산확보 가능금액은 총 12억원이고, 나머지 자치구는 아직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함(정보통신보안담당관 2021년 6월 9일 답변).

- 특히,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서 편성한 예산(86억6천6백원)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을 편성시부터 자치구의 집행가능성 및 준비 상태를 파악해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의 매칭액 미확보로 1억 6천 3백만원을 불용(불용률 1.9%) 처리하였는바, 이는 예산 편성시 철저한 정책설계 없이 예산확보에만 주력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동사업 추진에 있어 중·장기적인 설계를 통한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수요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셋째, CCTV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및 인권과 같은 이슈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없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넷째, CCTV가 범죄 예방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되었지만 인터넷과 연결된 CCTV 등은 오히려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및 관제요원의 영상정보 유출과 오·남용 방지 등이 우려되는바, 보안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마지막으로, ‘대학교 원룸촌 주변 CCTV 확대’ 설치가 범죄예방의 만능은 아니며, 원룸촌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방범 시설이 부실한 건물이 많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바, CCTV 설치와 더불어 원룸촌 주변의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사업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라. 정보격차해소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

○ 정보격차해소사업의 국고보조금반환은 이자 반납액을 세출예산에 미편성할 경우 '정산 후 최초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해야 함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9천 1백만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사업 중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장애로 인하여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이용률 확대를 통해 정보격차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고, 장애인과 고령인 정보화교육은 정보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적응능력 및 생산적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도모하려 하는 것임.

### 〈 세부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기정예산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증액 내용 및 사유
국고보조금 반환	0	91	91 (순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년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                     *국고보조금반환금(0→91백만원)                 </div>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은 자치구로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하고, '세출예산(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800 예비비및기타	
802 반환금기타	<b>01. 국고보조금 반환금</b>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2020년 정보격차해소사업 국비 집행실적 및 반납액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액	잔액발생사유
총 계	385,935	299,264	86,671	10,285	96,956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219,288	212,710	6,577	2,223	8,800	코로나19로 인한 심층 방문상담 미운영
장애인 정보화교육	148,133	78,071	70,061	5,885	75,951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집합금지 명령 등 외부 요건 악화로 대면 교육 운영 어려움
고령인 정보화교육	18,514	8,481	10,033	2,172	12,205	

○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의 2020년 목표는 8,500명 (장애인 7,000명, 고령인 1,500명)으로 23개 기관(장애인 18개, 고령인 5개)에서 코로나19의 확산에 의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대면 교육 운영의 어려움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54%에 불과하였고(4,599명), 교부액 1억 6천 6백만원 (국비 50:시비 50) 중 51.9%(8천 6백만원)만을 집행하였으며,

- 장애인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2020년 목표(440대) 대비 103% 달성하였고(451대, 시각 74명, 지체·뇌병변 13명, 청각·언어 364명), 교부액(2억1천9백만원)의 97%(2억1천2백만원)를 집행하였음.

〈 최근 3년간 정보격차해소사업 실적 및 국고보조금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잔액	실적(명)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잔액	실적(명)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잔액	실적(명)
합 계	508,740	500,585	7,882	17,958	418,866	413,894	4,967	13,291	385,935	299,262	86,673	5,050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243,293	238,758	4,535	501	234,142	229,649	4,493	470	219,288	212,710	6,578	451
장애인 정보화교육	243,047	242,585	462	13,454	169,295	168,893	397	10,334	148,133	78,071	70,062	4,046
고령인 정보화교육	22,400	19,515	2,885	4,003	15,429	15,352	77	2,487	18,514	8,481	10,033	553

〈 최근 3년간 정보통신보조기기 장애유형별 보급수량 현황 〉

(단위 : 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신청	보급	신청	보급	신청	보급
합 계	1,382	501	1,360	470	1,645	451
시 각	819	183	665	178	724	74
지체/뇌병변	65	38	51	39	53	13
청각/언어	498	280	664	253	864	364

○ 동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심층상담 미 실시로 인한 집행 잔액이고, 장애인과 고령인 정보화교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등 외부 요건 악화로 인한 대면 교육 운영 어려움으로 발생한 불가피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의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2020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장애유형별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시각 16.4%, 지체·뇌병변 2.9%, 청각·언어장애가 전체의 80.7%(451대 중 364대)로 장애유형별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바, 유형별 수요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장애유형별 보급수량 현황 〉

(단위 : 명(대))

구 분	계	시각장애	지체/뇌병변	청각/언어장애
2018년	501	183(37%)	38(7%)	280(56%)
2019년	470	179(38%)	42(9%)	249(53%)
2020년	451	74(16.4%)	13(2.9%)	364(80.7%)

○ 한편, “정보격차해소사업” 민간단체 보조금 교부 총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6%(2019년 8억1천2백만원)인 6억 1천 7백만원을 교부하였고, 이 중 6억 4백만원을 집행하고, 1천 2백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이 중 부당 집행잔액은 없으나 향후 예산집행 관련 사전교육 강화 및 철저한 관리·감독 등 민간단체보조금 사업관리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0년 정보격차해소사업 민간단체별 보조금 예산액, 교부액 및 정산액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기관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부당 집행액	부당 집행액 반납액	집행잔액 반납액
합 계		617,712	604,904	12,808	-	-	12,808

장애인 정보화교육	소 계	155,245	146,405	8,840	-	-	8,840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8,920	8,556	364	-	-	364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9,654	7,109	2,545	-	-	2,545
	도봉장애인복지관	9,066	9,066	0	-	-	0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관악구지회	9,088	8,752	336	-	-	336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4,950	4,950	0	-	-	0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9,665	9,312	353	-	-	353
	기쁜우리복지관	8,752	8,752	0	-	-	0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6,669	6,669	0	-	-	0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4,977	4,588	389	-	-	389
	충현복지관	10,550	9,716	834	-	-	834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5,565	5,378	187	-	-	187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8,388	8,388	0	-	-	0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6,848	5,980	868	-	-	868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7,990	7,990	0	-	-	0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9,172	9,172	0	-	-	0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8,774	8,774	0	-	-	0
	동작구장애인평생교육원	12,201	10,565	1,636	-	-	1,636
	성민복지관	14,016	12,688	1,328	-	-	1,328
	고령인 정보화교육	소 계	16,862	12,894	3,968	-	-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3,854	3,854	0	-	-	0
월계종합사회복지관		2,412	1,008	1,404	-	-	1,404
광진노인종합복지관		3,700	3,700	0	-	-	0
방배노인종합복지관		4,932	3,140	1,792	-	-	1,792
서서울어르신복지관		1,964	1,192	772	-	-	772
정보통신 보조기기보급	샤크로 등 24개 보급업체	445,605	445,605	0	-	-	0

## 2. 특별회계 세출예산 검토

-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구축과 공공와이파이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해 발행한(2020년 11월 20일) 지방채증권 원금상환을 위하여 20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기정예산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증액 내용 및 사유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도시개발 특별회계)	0	2,000	2,000 (순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11월 S-Net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분에 대한 원금상환</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                     ◦ 지방채증권원금상환(0→2,000백만원)                 </div>

※ 스마트도시정책관은 2020년 6월 제3회 추경에서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을 조기(당초 '22년 구축 완료 → 변경 '21년 구축 완료)에 완료하기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490억원을 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의 지방의회 의결(「지방재정법」 제11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의결 받았음. 하지만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490억원 중 20억원만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구축’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470억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명시이월 하였음.

○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지방채 20억원은 일반회계(285억원)와 도시개발특별회계(648억원) 등 총 4개의 회계에 2,600억원의 공모지방채를 1년 일시상환, 금리 0.885%로 2020년 11월 20일 발행하였고(서울시 지방채 발행결과 알림(2020-9호 참조)),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지방채 2020-9, 총액인수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 모집 방법의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지방채증권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채 총액인수계약서가 있음(「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참조).

「지방재정법」 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총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 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으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증권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3. 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
4.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
5.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6. 지방채증권의 이율
7. 지방채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8.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9.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할 때에는 그 뜻
10.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1.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뜻
12.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13. 지방채증권의 청약기한

**제14조(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13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스스로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지방채 20억원은 총액인수계약서(서울특별시지방채 2020-9)에 정한 바와 같이 2021년 11월 20일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함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으로,

- 지방채는 장래에 지역주민 및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자원조달 및 발행조건이 유리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주민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익과 연계하여 원리금상환과 이자 부담이 적절히 분산되도록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지방채증권 청약서, 지방채 조서, 지방채증권 발행실적, 지방채증권 연차별 상환계획

- 지방채증권 청약서, 지방채 조서 : 총액인수계약서(2020-09) 참조
- 지방채증권 발행실적
  - 대상사업 :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 회 계 명 : 도시개발특별회계
  - 발 행 액 : 2,000백만원
  - 발행일자 : 2020.11.20
- 연차별 상환계획 : 1년 일시상환(2021년 회계연도 내 상환완료 예정)
  - ※ 이자(총 17,700천원)는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기 편성됨

※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요구자료 944 제출자료(2021. 6. 3.) 참조.

○ 더욱이, 서울시 2020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2조 3,044억원으로 전년 대비 7.6%(1,652억원)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도 8,350억 2천 7백만원으로 가용재원이 충분하고,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 명시이월된 470억원은 아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는바, 원금상환과 이자 부담 등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지방채 발행이 아닌 순세계 잉여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0회계연도 재무국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발생 내역 〉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불납	시효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565,245	2,565,245	2,565,245	-	-	-	100.0%
<b>잉여금</b>	<b>2,304,433</b>	<b>2,304,433</b>	<b>2,304,433</b>				<b>100.0%</b>
순세계잉여금	835,027	835,027	835,027	-	-	-	100.0%
법정잉여금	1,469,407	1,469,407	1,469,407	-	-	-	100.0%

※ “세계잉여금”은 수납된 세입액-지출된 세입액(결산상 잉여금)을 말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세계잉여금-(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을 말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함.

○ 또한, S-Net 1차 사업 완료에 따라 시·구 공공와이파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품질 및 보안강화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 공공와이파이 노후 장비 교체 및 품질 고도화 추진을 위해 지방채 20억원을 발행하였으나,

- 「지방재정법」 제3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바,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구축 등을 위하여 지방채를 2020년 11월 20일 발행하여 세출로 충당한 것이 법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연도 내에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정도의 긴급한 사업이었던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35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①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구축**

S-Net 1차사업 완료에 따라 시·구 공공와이파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품질 및 보안 강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구축·운영코자 함

**통합관리센터 구축 필요성**

- 제각각인 공공와이파이 관리체계 일원화로 관리 효율성 대폭 개선
- 공공와이파이 SSID(식별자) 단일화 및 인증과정 간편화 - 사용 편리성 향상
-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 : 품질개선, 보안강화, 시민만족도 제고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1 ~ '21.12
- 장비내역 : AP 27,766대, 운영장비 5,841대, 통합관리시스템 1식
- 관제대상 : 서울시(실·국·본부·사업소) 및 25 자치구

- 시내버스, 마을버스, 버스정류소, 시 직영공원, 복지시설, 공공생활권역
- 운영장소 : 에스플렉스센터(운영실 15층, 장비실 20층)
- 공무원 : 사무실, 용역직원 : 용역사무실, 모니터링·관제 : 관제실

## ② 공공와이파이 노후장비 교체

### □ 추진 필요성

- 현재 운영중인 자가망-이동통신사AP 중 노후되어 품질 좋지 않은 AP를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
- 최신 와이파이6 장비성능 최대 활용을 위해 스위치 장비 도입 필요

### □ 추진계획

- 사업명 : ① 와이파이6 장비(AP) 구매 ② 산업용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
- 사업기간 : '20.11 ~ '20.12
- 구매방법 : 조달구매(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사업 변경계획, 2020.11., 9면.

- 특히, 2020회계연도에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정보제공포털 및 캡티브 포털 개발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전산개발비’로 예산을 전용(1억6천5백만원, 전용일자 2020년 11월 24일) 하였으나 전용한 예산의 87.8%를 사고이월 시키고(1억4천5백만원), 나머지는 전액 불용처리 하였는바, 예산의 전용 자체도 불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 “캡티브 포털(Captive portal, 종속포털)”이란 공개 무선망에 최초로 접속 시에 URL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나타나는 웹페이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에서는 와이파이 안내 및 일반접속, 보안접속 버튼이 있음.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전산 개발비	0	165,000	165,000	0	144,849	20,151

### ▶ 이월사유

- 전산개발비 : 사업계획변경으로 11.11에 사업계획 수립. 12월에 사업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

- 이는 예산 편성시 철저한 정책설계 없이 예산확보에만 주력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동사업 추진에 있어 중·장기적인 설계를 통한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수요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